#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24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이종배·김성원·성일종

박덕흠 • 이종욱 • 김예지

김상욱 · 김위상 · 엄태영

서천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,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.

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.

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,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받는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

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2(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등) ①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(이하 "기업도시 입주기업"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해당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아닌 지역에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 또는 고등학교(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사람(이하 "기업도시 지역인재"라 한다)을 입주기업의 채용규모, 해당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.
  - ②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범위는 입주기업의 채용규모, 기업도 시가 위치한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

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기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해당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 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범위는 입주기업의 채용규모,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학 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해당 기업도시가 위 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 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 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기업 도시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 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